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1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신장식·황운하·차규근

서왕진 · 김재원 · 민병덕

김선민 · 김준형 · 최민희

노종면 • 이훈기 • 박민규

이정헌 · 조인철 · 이준석

양문석 · 김우영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.

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·전문성·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,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

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9조, 제13조, 제13조의2 신설, 제 14조, 제1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 위원회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"을 "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사는 제1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·전문성·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1.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가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.

- 나.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2. 공사의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) 3명
- 3. 활동기간, 활동내역,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방송·미디어·교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 람 2명
- 4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5.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6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·의견수렴 등에 관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3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교육학·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경영학·행정학 그 밖에 교육·방송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
-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. 교육·방송·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. 교육·방송·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- 5의3.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4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 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후보자를 추천받을 경우 사장의 임기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 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.
 - 1.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
 - 2.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

람(재직중인 자를 제외한다)

- 3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선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자격 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갖춘 후 보자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) ①・② (생 략)	제9조(임원) ①・② (현행과 같
	으 :
③ 감사는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③이사회의 제청으로
임명한다.	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
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.	4
<후단 신설>	이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
	<u>야 한다.</u>
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	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회는 <u>방송통신위원회가</u>	② <u>이사장을 포함한</u>
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	<u>이사 15명</u>
구성한다.	
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	③ 이사는 제13조의2에 따른
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	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
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	<u>각 분야의 대표성·전문성·다</u>
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	양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
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	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
<u>한다.</u>	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
	령이 임명한다.
	1.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
	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
	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	가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

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.

- 나.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 하는 사람 1명
- 2. 공사의 임직원이 공모와 투
 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
 천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는
 제외한다) 3명
- 3. 활동기간, 활동내역,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방송·미디어·교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4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
 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5.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하는 사람 2명
- 6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
<신 설>

④ ~ ⑨ (생 략)

<신 설>
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・의견수렴 등에 관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<u>⑤</u> ~ <u>⑩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- 제13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교육학·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경영학·행정학 그 밖에 교육·방송·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공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6. ~ 12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 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
3. 교육・방송・언론 관련 단체 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. 교육・방송・언론 분야의 이

4. 교육・방송・언론 문야의 이 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 5의3.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

 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6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 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로부터 사장후보자를 추천받 을 경우 사장의 임기만료일 90

- 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.
- 1.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 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
- 2.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 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 하는 사람(재직중인 자를 제 외한다)
- 3. 여성, 장애, 다문화, 지역, 환 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 로 선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구 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 런하여야 한다.

⑤ 이사회는 자격・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을 갖춘 후보자를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 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